



서우회계법인 베트남

SEOU VIETNAM ACCOUNTING COMPANY LIMITED

Tax Updates in Q4 2025 - Supplement

고객사 여러분,

기존 내용 상 개인소득세법 개정사항 중 자본이전소득에 대한 내용을 법인세와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 Supplementary Note 를 통해 법인세법도 추가로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개정사항

Law No. 109/2025/QH15 (2026 년 7 월 1 일부터 시행이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 관련된 규정은 2026 년 과세기간부터 적용)

6. 자본이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산정방식

유한회사의 지분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거 순 매각차익의 20%로만 과세하였으나, 취득가액 및 관련양도비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의 2%로 과세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Note)

과거 소득세법 상 매도대상 회사의 type 에 따른 지분양도소득의 과세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회사 매도자	유한회사	비상장 주식회사	상장 주식회사	원천징수 의무자
	개인 Capital gains x 20% (Current CIT rate)	Selling price x 0.1%	Selling price x 0.1%	대상회사

금번 개정으로 매도대상 회사가 유한회사로서, 취득가액 및 관련양도비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2%로 과세하는 방법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는 기존 원칙(양도차익의 20%)이 유지되면서 예외적인 방법(양도가액의 2%)이 추가된 것이며, 두 가지 과세방식을 동등하게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한 것은 아님에 유념해야 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합리적인 자료를 통해 취득가액 및 관련비용을 추정·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관련 양도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과세당국은 이를 조세회피적 주장으로 보고 부인할 가능성이 큼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양도가액의 2% 과세 적용의 여지가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 오래전에 설립되었고 관련 서류가 소실·폐기된 경우
- 개인 간 비공식 출자,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 과거 법령·실무상 취득가액을 명확히 기록할 의무가 없었던 경우 등

결국 핵심은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 설명과 정황이지, 납세자에게 부여된 선택권은 아닌 것입니다.

(Supplementary Note)

매도자가 **법인**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Before)

대상회사 매도자	유한회사	비상장 주식회사	상장 주식회사	원천징수 의무자
	외국법인 양도차익 x 20% (Current CIT rate)	양도차익 x 20% (Current CIT rate)	양도가액 x 0.1%	대상회사
국내법인	양도차익 x 20% (Current CIT rate)			N/A

(After)

대상회사 매도자	유한회사	비상장 주식회사	상장 주식회사	원천징수 의무자
외국법인	양도가액 x 2%	양도가액 x 2%	양도가액 x 0.1%	대상회사
국내법인	양도차익 x 20% (Current CIT rate)			N/A

이는 개인소득세법 상 특정 조건 하에서 양도가액 기준 과세방식이 보충적 과세방법으로 추가된 것과 달리 **외국법인이 베트남 유한회사 등을 매각하는 경우 실제로 발생한 양도차익과 무관하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며, DECREE No. 320/2025/ND-CP 가 발효되는 **2025 년 12 월 15 일** 이후의 양도거래부터 적용됩니다 (심지어 양도차손, 즉 투자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지분매각 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함).

이에 대해 동일그룹 내에서 지분이 이동하는 경우로서 양도거래 이후에도 최종 지배회사가 변경되지 않고 양도차익 또한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 예외규정도 도입되었으니 이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의 원문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DECREE No. 320/2025/ND-CP (December 15, 2025)

Article 12. CIT calculation method

3. CIT payable by **foreign enterprises** in Points b2, b3 and b4 Clause 1 Article 2 of this Decree shall be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assessable revenue** by a percentage (%). To be specific:

g) Transfer of securities; overseas reinsurance: 0,1%;

i) **Capital transfer** (except ownership restructuring transactions between companies of the same corporate group that do not change the Ultimate Parent Entities of the parties which directly or indirectly own enterprises in Vietnam after restructuring and do not generate income): **2%**;

Article 24. Entry into force

b) Regulations on proofs of cashless payment in Point c Clause 1 Article 9 and regulations on capital transfer in Point I Clause 3 Article 12 of this Decree **shall apply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is Decree. (December 15, 2025)**